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1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김용덕[6571]/E-mail 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8872호

시행일자 2023. 10. 16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(수정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397 (2023. 9. 7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-7402호 (2023. 9. 11.)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947 (2023. 10. 11.)

3.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를 안내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397호, 2023. 9. 7.)하였으나,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안이 변경되었다며 공문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947호, 2023. 10. 11.)을 보내온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<수정사항>

연번	질의	변경	비고
3	‘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(AH059)’, ‘ <u>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(AH056, AH057)</u> 산정 가능한지?’	질병군 명세서 진료내역 “01항 03목” 란에 기재하여 청구	대상 추가 (AH059) → AH059 <u>AH056</u> <u>AH057)</u>

※ 「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」 중 ‘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(AH056, AH057)’, ‘코로나19분만격리관리료(AH059)’ 는 질병군명세서로 청구함

#붙임자료

- 1)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947(2023. 10. 11.) 공문 1부.
- 2) 코로나19등급하향에 따른(신)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등 안내(수정)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.”

*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, 각과개원의 협의회, 한국여자의사회, 대한병원장협의회